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Ⅰ 운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이하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단,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정보는 비밀 정보가 아니며,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임.
 -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공공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통지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까지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를 기재함.

II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 제1항 각호)

법 제9조 제1항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 8359)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 :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4.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5.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6.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7.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8.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감사실	회계·복무·일상감사 관련 업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업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청렴도 및 부패예방 관리, 직원 복무 감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내부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진정·비위사실·특명의 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감사대장 작성 등 감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안전 정보화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 포함)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시행·평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사항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9.25)
2.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12.28)
3.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비공개
 -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 “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4.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법 제9조
제1항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개별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공개로 인한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국가안전보장, 국방)
2. 남북회담 협상 대상 수립,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3.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4.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 훈련·국가재난훈련)
5.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8.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9.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인사 총무부	보안, 당직 및 관인 관리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난 및 비상대비, 민방위에 관련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 관리부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관리(방호, 미화, 주차장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전기·통신·기계·소방·에너지 및 상하수도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건축·토목·청소 관련 유지보수 및 용역관리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폐기물, 위험물 보관,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보유종인 독극물의 종류, 폭발물·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등
안전 정보화부	기관 정보보안 및 통신보안 업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물 안전점검(건물, 소방, 연료가스 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산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구축·관리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모니터링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관 정보화사업 운영 및 관리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기관 전산장비 및 기자재 관리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현황
	기관 정보보안 및 통신보안 업무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 자원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 기밀에 해당함.(대법원 2001.1.28. 선고 99도4022 판결)

**법 제9조
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수사 관계 조회사항
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3.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4.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5.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6.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7.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의 저장 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협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감사실	진정·비위사실·특명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기획 성과부	기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 총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인사 총무부	보안, 당직 및 관인 관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감업무
시설 관리부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관리(방호, 미화, 주차장 관리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전기·통신·기계·소방·에너지 및 상하수도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건축·토목·청소 관련 유지보수 및 용역관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청사 에너지 관리 및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폐기물, 위험물 보관,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전시부	전시·관람 편의시설(수유실, 유모차 대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조경유지관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온실관리종합계획 수립·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교육부	교육 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동물 자원 연구부	동물(척추, 무척추 등) 자원 조사·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동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식물 자원 연구부	식물(고등, 하등 등) 자원 발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미생물 자원 연구부	미생물(원핵, 균류, 원생(조류)) 자원 발굴·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미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유전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오믹스(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에 관한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도서·연안 유전자원 관련 연구과제 기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실용화 연구부	실용화연구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대체동물을 활용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바이오 신소재 확보 기술 개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대체동물 기초 활성 평가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도서·연안 생물자원 세포 기반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도서·연안 생물자원 항균 등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산업화 유망 생물자원 유래 유효물질 실용화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환경 소재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독성완화 생물자원 연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환경위기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활용 연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응용생물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사업화 지원부	국내외 산업화 협력 사업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연구 관리부	연구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비공개

(Luther v. LRS, No.5-86-130, Slip op. at 6(D. Minn. Aug. 13, 1987)

2.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 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법 제9조
제1항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2구합 24499)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 12629)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94헌마60, 대법원 2002두 1342.)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기획	기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 총괄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성과부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법률자문 결과,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고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99구147)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이에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 불시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2.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등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사·회의록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사업추진,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자원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6. 평가·진단·승인·심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7.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하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8. 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자원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9.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감사실	감사 중장기 전략 및 연간 감사계획 수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회계·복무·일상감사 관련 업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업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청렴도 및 부패예방 관리, 직원 복무 감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대장 작성 등 감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갑질 근절,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채용분야 공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기획 성과부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주요 사업·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이사회 운영·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정과제 등 공공기관 정책 대응 업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경영성과 평가 및 직원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령, 정관, 내부 규정 제·개정 및 관리 총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산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직제 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전략 홍보부	중장기 대외협력 전략 수립·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대국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외 협약서, 연구논문 영문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국내외 대외협력 총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사 총무부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임직원 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업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총괄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내외 출장심의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재무 회계부	회계연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물품 및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시설	조사선박 건조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관리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안전 정보화부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시행·평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시부	상설·기획·특별전시실 기획·구성·연출 및 전시품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전시기법 개발 및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기간제(단시간)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육부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교육 기법 개발 및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학부모 체험단 구성·운영·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교육 관련 대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동물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동물 생물자원 인벤토리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동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외부전문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섬생물탐사단 운영 등 관련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식물 자원 연구부	식물(고등, 하등 등) 자원 발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섬 지역 식물(관속식물, 선태식물) 종 목록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식물 분야 신종·미기록종 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미생물 자원 연구부	미생물(원핵, 균류, 원생(조류)) 자원 발굴·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동물 생물자원 인벤토리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미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미생물자원정보 DB 통합관리에 관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유전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오믹스(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에 관한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유전자원 라이브러리 구축에 관한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유전자원 기탁 및 오믹스 정보 DB 구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지역 생물 다양성 평가기반 구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유전자원 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실용화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신규소재 가치 평가 및 기능성 인증 확보(약동성 평가, 제형기술 개발, 안전성(독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통지식 기반 도서·연안 유용 생물자원 정보 및 DB 구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체동물을 활용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바이오 신소재 확보 기술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체동물 기초 활성 평가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세포 기반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항균 등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산업화 유망 생물자원 유래 유효물질 실용화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천연 소재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용생물 성분 및 효능 분석(기초 생리활성평가 정보생산)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천연추출물 생리활성 정보 DB 구축 및 전문 도서 발간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천연소재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대량 증식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용 물질 대량 확보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기내 증식 기술을 활용한 정보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천연물 유용가치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가공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천연물 내 유해 물질 기준·표준화 분석 및 정보생산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환경 소재 연구부	응용기술 생물자원 균주(strain) 확보 및 기탁(자원은행부 협업), 응용정보 DB 구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독성완화 생물자원 연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응용생물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파지테라피 기반 환경개선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박테리오파지 발굴 및 자원 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환경위기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활용 연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미세조류 활용 지속가능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발효 미생물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발효 미생물 발굴 및 자원 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식품 미생물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박테리아 유용성 발굴 및 검증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업화 지원부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 업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내외 산업화 협력 사업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원 은행부	생물자원 장기 생체보존기술 개발 및 안정성 평가 관리(산업화 분양 자원의 품질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서·연안 유용 생물자원·생태정보 DB 구축·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구 관리부	연구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구사업 실행 예산 수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연구사업 관리 및 심의·평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총괄 (LMO,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의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5.30. 선고.)
2. 민간투자심의회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공개 여부(대구지법 2006구합 820→비공개(5, 6호))
 - *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공개/비공개
 - * (공개)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관한 고충민원 기록서, 고충민원 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
 - * (비공개)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갓 |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4.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단, 본인의 명부 순위나 점수 등은 공개 가능
5. 다면평가의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6.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가

법 제9조
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의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성명·지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사생활의 비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 자유: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및 양심, 종교 및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생활에 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3.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 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다만, 설계심의위원회 명단 등 다른 법령에 의거 공개하도록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직원에 관한 정보
 - 특정 직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서, 출근부의 직원성명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결격사유조치,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7.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8.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감찰,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된 개인 사항
9.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10. 감서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11. 사보, 인터넷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사항
12. 기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14.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의익의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감사실	회계·복무·일상감사 관련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청렴도 및 부패예방 관리, 직원 복무 감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내부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진정·비위사실·특명의 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감사대장 작성 등 감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기획 성과부	이사회 운영·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이사회 구성원에 관한 정보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총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경영성과 평가 및 직원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략 홍보부	고객만족도 및 제안제도 총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대국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인사 총무부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임직원 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총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임직원 보수 등 각종 급여체계 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민원사항 및 정보공개제도 총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민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임직원 건강진단 및 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재무 회계부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각종 지출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시설 관리부	조사선박 운영(기관장, 항해사, 갑판장)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전 정보화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 포함)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정보, 질병정보 등 특정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시행·평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시부	관람객 만족도 조사·관리 및 관람 서비스 제공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시시설 운영 영상물, 사인물, 홍보물, 출판물 등 제작·운영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기간제(단시간)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문해설자원봉사자(주니어 도슨트, 시니어 도슨트)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회원 등록 및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단체 관람 예약 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교육부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교육강사 위촉, 경력 및 인력풀 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교육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문가 자문 그룹 구성·운영·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학부모 체험단 구성·운영·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동물 자원 연구부	동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외부전문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
	섬생물탐사단 운영 등 관련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식물 자원 연구부	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미생물 자원 연구부	미생물자원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전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유전자원 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실용화 연구부	실용화연구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천연 소재 연구부	천연소재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환경 소재 연구부	응용생물 연구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환경위기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활용 연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업화 지원부	국내외 산업화 협력 사업과제 기획 및 성과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원은 행부	도서·연안 유용 생물자원·생태정보 DB 구축·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연구 관리부	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됨(대법원 2003.12.11.)
2.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대법원 2001두6425)
→비공개
 -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3.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비공개(행정자치부 05-17455)
4.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 05-16330)
5.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공개
6.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개(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7.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9463)

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8두 13101.)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 24647, 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등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전적으로 내부관리를 위한 문서

- 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업무일지, 내부회의 개최기록 등)
 - 소모품 구입, 내부회의 개최, 여비교통비, 광열비 등 일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유지·역무의 조달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서
5.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 조사연구결과 또는 다른 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사업 계획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관계자의 의견조사결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6. 연구에 관한 문서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7. 그 밖의 공개될 경우 개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기획 성과부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총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인사 총무부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복지·편의시설(식당, 카페, 매점 등) 운영·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 회계부	출연금 교부신청 및 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무관리(부가세, 법인세, 주민세 등) 및 법인카드 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각종 지출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본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산의 평가,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수입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유가증권 보관 및 보유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카드 증빙 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 관리부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관리(방호, 미화, 주차장 관리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산의 평가,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안전 정보화부	안전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 관련 업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시부	상설·기획·특별전시실 기획·구성·연출 및 전시품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시표본 제작·확보·관리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경유지관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시시설 운영 영상물, 사인물, 홍보물, 출판물 등 제작·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원 등록 및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장료, 관람료 등 수입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물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동물 생물자원 인벤토리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산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식물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동물 생물자원 인벤토리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미생물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동물 생물자원 인벤토리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미생물자원정보 DB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유전 자원 연구부	도서·연안 유전자원 라이브러리 구축에 관한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유전자원 기탁 및 오믹스 정보 DB 구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용화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신규소재 가치평가 및 기능성 인증 확보(약동성 평가, 제형기술 개발, 안전성(독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통지식 기반 도서·연안 유용 생물자원 정보 및 DB 구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체동물을 활용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바이오 신소재 확보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체동물 기초 활성 평가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세포 기반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항균 등 기초 유용성 평가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업화 유망 생물자원 유래 유효물질 실용화 연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천연 소재 연구부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용생물 성분 및 효능 분석(기초 생리활성평가 정보생산)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천연추출물 생리활성 정보 DB 구축 및 전문 도서 발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대량 증식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용 물질 대량 확보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내 증식 기술을 활용한 정보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천연물 유용가치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가공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천연물 내 유해 물질 기준·표준화 분석 및 정보생산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환경 소재 연구부	응용기술 생물자원 균주(strain) 확보 및 기탁(자원은행부 협업), 응용정보 DB 구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파지테라피 기반 환경개선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박테리오파지 발굴 및 자원 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미세조류 활용 지속가능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발효 미생물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발효 미생물 발굴 및 자원 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식품 미생물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대상정보
	개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박테리아 유용성 발굴 및 검증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업화 지원부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 업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원 은행부	생물자원 장기 생체보존기술 개발 및 안정성 평가 관리(산업화 분양 자원의 품질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배양체 소재은행 운영 및 관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구 관리부	연구사업 실행 예산 수립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구사업 관리 및 심의·평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 8302.)
2.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 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원칙적 공개(법제처 11-0395)
3.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 정보→비공개(○○고등법원 2002누19086)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비공개(때법원 2003두8302)
5.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 정보→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법 제9조
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용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1. 투자심사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3. 그밖의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업무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 해당사항 없음.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824)
2.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과 협의결과→공개(환경부 2005-10233)